

구타인가 병환인가 - 아무도 보지 못한 치사 사건의 조사 대한제국 광주부 정구갑 치사사건의 검시기록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검토

홍성욱¹, 이송덕^{2,3}, 신동훈³

¹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²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³서울대학교 법의학연구소

Forensic Anthropological Analysis of Post-Mortem Examination Report on Jeong Gu Gap of Gwangju City in the Korean Empire

Seonguk Hong¹, Soong Deok Lee^{2,3}, Dong Hoon Shin³

¹Soon Chun Hyang University Institute of Humanities

²Department of Forensic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³Institute of Forensic and Anthropological Scienc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a forensic anthropological review of the investigation reports conducted four times concerning a death case that occurred in 1904 in Gwangju-bu, Korean Empire. In this case, the victim's family alleged that the deceased had been beaten to death by individuals who were coercing him to join a merchants' organization, prompting the authorities to begin an investigation. Initially, the forensic examinations did not reveal clear signs of physical assault, and there were no witnesses who had directly seen the victim being beaten. Furthermore, the suspects denied any involvement in the assault. As a result, the first two investigations concluded that the death had been caused by illness. However, during subsequent investigations, additional evidence of beating was discovered, and the suspects—who had previously denied the accusations—suddenly confessed. As a result, the final conclusion was revised to state that the cause of death was due to assault. This case exemplifies how, during the Joseon period (Korean Empire), the resolution of suspicious death cases required the convergence of three elements: testimonies of those involved, autopsy findings, and relevant legal clauses in documents such as the *Muwonrok*. Only when all three were consistent could a case be considered fully resolved. Notably, this case shows that even when a causal relationship seemed evident, courts would not acknowledge it unless all three criteria were met.

Keywords : Muwonrok, Joseon period, Korean Empire, Post-mortem examination record, Forensic anthropology

This work was suppor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Grant (융복합 연구과제 지원사업: 800-20220548) a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교육연구장려비: 2025).

저자(들)는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저자(들)는 이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힙니다.

Received: May 4, 2025; **Revised:** July 23, 2025;

Accepted: July 29, 2025

Correspondence to: 신동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E-mail: cuteminjae@gmail.com

서론

조선시대의 사망사건은 고발이 있을 경우 관에 의해 철저히 조사되었으며 이는 국가의 체계적 행정 조직을 동원하여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기본적으로 초검과 복검 두 차례에 걸친 검시와 증인에 대한 취조는 필수적이었으며 이후에도

집에 가서 부상단에 입단할 것을 강권하다가 거절당하자 구타·사망케 한 사건이었다. 사건을 처음 고발한 정구갑의 6촌 동생 정웅이(35세)가 고발한 내용에 따르면 임춘화, 광명운 두 사람이 부상단 가입을 거부하는 정구갑을 힘을 합쳐 난타하여 앓다가 죽었다 하였다(並力亂打 仍爲致死).

2. 초검 검사와 심문, 결론

광주부윤이 사망사건에 대한 고발을 접하고 같은 해 1월 14일(음력 11월 27일) 오전, 남성 정구갑의 시신이 안치된 동부면 장례촌에 도착하여 검험을 시작하였다. 검시의 결과는 Fig. 2에 요약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초검에서는 시신에서 구타에 의한 흔적으로 볼만한 상처를 확실하게 특정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초검 검사는 정구갑이 사망한 지 하루 만에 시행된 것인데 대부분 정상으로 보였으며, 다만 몇 가지 특이한 소견으로 콧구멍에서 피가 흘러내린 점, 입에서 피가 흘러내린 점, 배꼽 부위에서 색깔이 푸르스름한 부위를 확인한 점, 옆구리 뒤에 피부가 벗겨진 부위를 확인한 점 등을 기술하였다.

검사와 동시에 시행한 관련자의 심문 내용은 아래에 요약하였다. 사건에 대해 의미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한 증인은 모두 생략하였다. 초검에서 검험관은 필요한 경우라면 여러 차례 동일인에 대해 취조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나로 묶어 관련자별로 정리하였다.

1) 발고시친(처음고발한 유족) 정웅이(鄭雄伊) 35세 (정구갑의 6촌 동생이며 처음 고발한 사람으로 맹인)

임춘화, 광명운 두 사람이 육촌 형 정구갑을 구타하여 거의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형수로부터 듣고 가보니 과연 심각하였음. 형수로부터 듣기를 임, 광 두사람이 보부상에 가입할 것을 강요하였고 이를 거부한 정구갑을 둘이 합세하여 이리저리 휘두르고 끌고 다녀(被其揮曳) 이로 인해 정구갑이 병석에 자리보전하고 있었는데, 요안(腰眼)이 끊어질 듯 아프고 복중(腹中)이 당기거나 켕기어 쑤시고 아파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약을 구해와 복용시켜도 먹은 즉시 바로 토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사흘 만인 11월 26일(음력이며 양력 1904년 1월 13일) 아침에 두 차례 피를 토하다가 마침내 숨졌다고 함. 검험관은 정웅이에게 맹인인 고발인이 형인 정구갑이 맞을 때의 광경을 직접 목격하였는가 하고 물었는데 본인이 맹인이라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답하였다. 다만 죽은 형의 나이는 40세이며 평소 병은 없었으며 저렇듯 건강한 사람이 3일 만에 갑자기 죽었다고 하여 죽인 사람을 처벌해 달라고 하였다.

2) 시친(유족) 이조이 37세(정구갑의 아내)

음력 11월 24일 저녁 식사 후 임, 광 두 사람이 집으로 와서 남편 정구갑과 보부상에 가입하는 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자신이 엿보았다 한다. 임, 광 두 사람은 보부상에 가입하는 문제로 이야기를 꺼냈는데 남편은 옛날에 이에 가입한 적 있지만 지금은 곤란하며 마을 정참봉이 (다른 마을의 부상)에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확인한 후 참여하겠다 하였다. 그러자 광가가 먼저 남편을 끌고 가고 임가는 뒤에서 밀며 (남편의) 어깨를 붙잡고 끌고 가고자 하여, (남편은) 집으로 들어와 의관을 갖춰 입고 두 사람과 같이 집을 나갔다. 남편이 두 사람에게 보부상 가입 첩장(帖狀)을 내어 달라고 하니 그들은 함께 술집(東京麴酒店)으로 가면 줄 수 있다고 하여 남편이 따라가지 않으려 하였지만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끌고 갔다. 한 식경 후에 남편이 돌아왔는데 말하기를 두 사람에게 주점으로 끌려가서 술만 마셨을 뿐이고 첩장은 받았다고 하였는데 자리에 누워 고통을 참지 못하며 말하기를 ‘두 사람에게 세 차례 휘둘러서(三次被揮) 등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腰眼如絕) 배도 끊어질 것 같다(腹中如切)’고 하고 제대로 앉지도 눕지도 못하며 먹은 음식은 모두 토해내며(嘔吐所食之物) 밤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다가 손수 약을 달여 먹여도 즉시 토하고 목이 마르고 배속이 불타는 듯 뜨겁다고 하여 연신 냉수를 찾기에 냉수를 연달아 마셨지만 바로 토해내며 병세가 점점 심해지다가(喉喝如焚 腹熱如火 連尋冷水 連飲冷水 旋爲吐出 病勢漸劇) 다음날인 26일 아침 두 차례나 피를 토하고는 마침내 죽어 버렸다. 자신과 남편은 임, 광 두사람은 전혀 알지도 못하며 평소 원인이 있던 사이도 아니라고 하였고 남편이 직접 구타당한 사실을 목격하지도 못하였다고 말했다. 재심 때에는 광가와 임가가 남편과 실랑이하는 것을 보았을 뿐 남편이 넘어지는 것도 직접 보지는 못했다고 하였다.

3) 임춘화 45세(사건의 주범 혐의자)

신평리(新坪里) 부상처소(負商處所)의 공원(公員)으로서 광명운과 함께 정구갑 집으로 가서 그를 불러내어 말하던 중 광명운이 잔소리 말고 보부상의 처소로 가자고 하면서 손으로(정구갑의) 허리춤을 잡고 끌고 나오고 자신은 그의 등을 밀었는데 그가 마당 위에 꼬꾸라지니 광가가 다시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고는 ... (중략)... 정구갑이 다시 그의 집으로 돌아가 의관을 갖춰 입고 나오니 광가가 함께 술집으로 가야 첩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정구갑이 따르려 하지 않자 광가가 두 차례나 그를 끌어당겨 땅바닥에 꼬꾸라져 자신이 광가를 말려 붙잡은 손을 풀었다. 그 후 일행은 주점으로 같이 가서 탁주를 마시고 첩장을 써서 발급해주고는 헤어졌다고 하였다.

임춘화의 증언에 의하면 실랑이 과정에서 자신이 정구갑의 등을 밀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구갑에게 실제 위해를 가한 것은 광명운으로 자신과는 관계가 없고 그때 상황 자체도 구타한 것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4) 간련 광명운 35세(사건의 중범 혐의자)

자신은 임춘화의 지휘를 받는 사람으로 당일 옷을 당겨 끌고 간 적은 있지만 바로 손을 놓고 풀어주어 정구갑이 자기로 인해 자빠진 적은 결코 없다고 하였다. 오히려 상급자인 임춘화가 스스로 정구갑을 밀었으면서도 취조에서 자신에게 죄를 미루고 엮어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구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초검 보고서의 끝에는 초검관 윤찬이 이 사건에 대한 견해와 사망의 주요 원인(實因), 그리고 각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결을 적어두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시신에 대한 검시과정에서 뚜렷한 구타의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고, 취조의 결과에서도 정구갑이 구타당했다는 증언이 명확히 나오지 않은 대신 이리저리(정구갑이) 잡아 휘둘리며 넘어졌다는 이야기만 있어 맞아 죽은 것(被打致死)으로 사망원인(實因)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정구갑의 사망원인은 구타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병으로 죽은 것(因病致死)이라고 하였지만, 그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임춘화, 광명운에게 어쨌건 묻지 않을 수 없었던 듯 하다. 둘 중에 누가 정구갑의 사망원인에 더 큰 책임이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두 사람 사이에 그 책임을 상대방에 전가하는 증언이 있었고 주도적으로 위해를 가한 이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임춘화가 상급자이므로 정범으로, 광명운을 중범으로 정하였다.

3. 복검 검시와 심문, 결론

조선시대 치사사건에서 초검과 복검은 반드시 서로 다른 검험관에 의해 반복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두 번의 조사가 동일한 결과를 냈을 때에 공식적으로 조사는 종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도 복검 조사 명령서가 1월 24일자 파주군수(坡州郡守) 신석효(申錫孝)에게 전달되었다. 해당 군수에 의해 작성된 2월 13일자 보고서에는 초검과 동일하게 관련자들의 심문·증언 내용이 있으며 시장에는 검시 내용이 적혀 있고 마지막에 복검관의 의견이 적혀 있었다.

검시 결과는 Fig. 2에 함께 정리하였다. 요약하면 초검 때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외상을 흔적을 검시 결과에서 확인하기 어려울 뿐더러 그나마 초검에서 확인하였던 몇 가지 이상 소견도 대략 3주가 더 경과했기 때문인지 복검에서는 볼 수 없게 되었다.

심문에서는 다른 증인의 경우 초검과 별 차이가 없지만 사

건의 판결에 중요한 임춘화, 광명운의 증언은 그 추이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춘화는 초검 때 증언과 마찬가지로 처음 정구갑을 마루에서 끌어내릴 때 자신은 뒤에서 밀었을 뿐 정작 심하게 당긴 것은 광명운이라고 하였다. 정구갑이 마을의 집강에게 먼저 가서 고하겠다고 하여 실랑이가 있을 때 그가 넘어지게 된 것도 임·광 두 사람이 함께 밀고 당겨 그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광명운은 실랑이가 있었을 때 자신은 단지 한 번만 당겼을 뿐이고 정구갑을 밀고 당겨 자빠뜨린 것은 임춘화라고 하였다. 이처럼 복검에서도 임춘화, 광명운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었지만 양자 모두 정구갑을 구타했다는 자백은 여전히 하지 않았으며 밀고 당겨 쓰러뜨린 것도 여러 차례 반복되는 정도로 심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뺌하였다. 이에 복검관이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았다.

이 옥사는 흠집이 나도록 한 상처(痕損)조차 없으며 게다가 단 한 명의 혐의를 입증할 사람조차 없으며, 지금 이 시신을 법에 의거해 검험하니 죽은 시간이 거의 한 달이 되었는데 이 엄동설한을 만나(시신이) 조금도 부패하지 않았으니(시신에 남아 있는) 푸르고 붉은색은 저 시신의 변동(變動)과 연결된 것으로(몸이) 상한 부분(傷損)이 전혀 없고 뒷마루의 높이를 관척(官尺)으로 헤아려 보니 두 자 두 분(二尺二分, 61 cm 정도)으로 높지 않다 할 수도 없고, 대추나무 아래 마당에는 평소 쌓아 놓은 흙으로 인해 겨울에 얼어서 더욱 딱딱해졌으니 저 높은 뒷마루와 딱딱한 땅에 떨어져 고꾸라지면 창자(腸腑)가 놀라지(震絕) 않을 수 없고... (중략)... 정씨(정구갑)가 시골의 양반으로 갑자기 저 부부상들로부터 능욕을 당하여 뒷마루에서 떨어진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고 마당에서 자신을 밀치니 수치스러움과 분한 마음이 동시에 일어나 먹은 저녁 음식이 어찌 제대로 내려갔겠는가? 게다가 엄동설한의 밤 기운이 밖에서 뿔속까지 스며들고 술집의 진한 막걸리는 안으로 쌓여서 구토가 멈추지 않다가 마침내 죽게 되었으니 입에서 불이 나고 배가 끊어지는 고통(口焚腹切之痛)은 반드시 체한 증상(滯崇)으로 나타나고 입과 눈이 닫히며 명치 아랫부분(腹肚)이 꺼져 있고 두 손을 약간 움켜쥐고 있는 등의 여러 증세가 법문(法文) 중에 있는 병환에 의한 사망조항(病患死條)과 긴밀히 연결되니 이런 까닭에 이 사건의 실인(實因)은 병으로 인해 죽은 것[因病致死]으로 기록하고... (후략).

결국 초검 때와 마찬가지로 검시와 증언 모두에서 구타에 의한 죽음이라는 사실 확인에는 실패하여 병으로 인해 죽은 것으로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타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더라도 정황상 임춘화, 광명운에게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보고, 임춘화를 정범, 광명운을 중

범으로 결정한 것은 초검 때와 같았다.

4. 삼검 검시와 심문, 결론

조선시대의 치사사건 조사에서는 초검과 복검 이후 다시 검험을 실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는데 이 사건의 경우가 그러했다. 초검과 복검을 받아본 본부는 혼령으로 말하기를 광주부 동부면 장례촌에서 벌어진 살인사건이 이미 두 차례 검험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망한 이유와 실제 원인이 매우 모호하므로 이대로 사건을 종결하기 어려워 세 번째 검험을 지시하였다. 삼차 검시관으로 임명 받은 이천군수는 3월 11일부터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그 보고서를 나흘 만인 3월 15일자로 제출하였다.

초검과 재검에 비해 삼검에서는 검시와 심문 결과가 이전 두 번의 검험과 비교하여 많은 차이가 있었다. 우선 검시 과정에서 이전에는 관찰하지 못했던 소견을 다수 삼검에서 확인하였다. 요약하면 먼저 이마뼈에서는 암적색 상처를 한 곳 확인하였고 양쪽 광대 부위에서도 각각 한 곳씩 상처가 보였는데 색깔은 암자색(黯紫色)이었다. 인후두에서는 피멍이 보였는데 손가락으로 누르니 피가 흘러나왔다. 고환에도 상처가 있는데 여기도 색깔은 암자색이었다. 목 뒤 부분과 어깨 뒤의 상처도 확인되었는데 색깔은 청흑색 혹은 암자색이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초검과 복검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기술된 부위에서 비정상적 소견을 다수 확인하였다(Fig. 2).

또한 삼검 때에는 사건의 피의자인 임춘화 및 광명운이 주목할 만한 진술을 하였다. 먼저 피고 임춘화는 정구갑과 주점으로 가자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그가 주먹으로 정구갑의 광대 부위를 치고 광명운은 아랫배 부위를 쳤다고 삼검 취조 중 실토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광명운도 같은 자백을 하여 다투어 있을 때 임춘화는 주먹으로 정구갑의 머리와 광대 부위를 때리고 자신은 허리띠를 잡고 아랫배를 주먹으로 때렸는데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하였다. 다만 이 둘의 자백에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정구갑을 쳤는지, 언제 때렸는지 등 세부적 부분은 차이가 있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상대방에게 더 큰 책임을 돌리고 있었는데 왜 이들이 삼검 취조 중 자신들이 구타하였던 적이 있다고 자백하게 되었는지 그 경위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이 구타했다고 이야기하는 얼굴 부위와 아랫배 부위는 검시과정에서 상처 흔적으로 확인한 이마뼈, 광대, 인후두, 목 뒤의 상처와 고환 부위의 상처가 각각 대응하므로 삼검관은 임·광의 자백과 정구갑 검시 결과가 서로 일치한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따라서 삼검의 판결은 초검, 복검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보고서에 남아 있는 검험관의 기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액각(이마뼈의 가쪽 부분)에 있는 상흔은 둘레의 길이가 7촌 9푼이 될 정도로 넓고 크며, 색깔은 암자색으로 살갓에 단단히 붙어 있으며, 좌우의 뺨은 모두 맞아서 생긴 상처(피상흔)가 있고 색깔은 암자색으로 (역시) 살갓에 단단히 붙어 있는데, 왼쪽 뺨의 상흔은 길이가 네 자 두 푼, 오른쪽은 일곱 자 두 푼이다. 입은 조금 벌어져 있고, 인후(咽喉)와 식기상(食氣類)에 피멍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누르니 피가 흘러나왔다. 양손은 약간 쥐고 있으며 아랫배 생식기 부위에 상처가 한 곳 있는데 둘레는 세 치 일 푼이요 색은 자암색이고 피부는 단단히 붙어 있었다. ... (중략)... 몸의 뒷면에서는 목, 등, 턱 등은 청흑색이요 부어 있는 정도가 심하였다. 오른쪽 어깨에 상처가 있는데 ... (중략)... 색은 자암색,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었다. 향문(穀道)을 은비녀로 시험하니 색이 조금 변하였는데, 그를 끌고 내던지는 과정에서 내장이 요동치며 독기가 위로 치받고 아래로 공격한 것이니 이 검시 결과를 살펴보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을 참고하면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이 분명히 드러난다. 여러 상처에서도 주먹에 맞아 증상을 입은 것을 징험할 수 있으니 그 중하고 중하지 않은 정도를 논한다면 처음 구갑이 뒷마루에 앉아 있다가 몇 자 아래 마당위 돌 사이로 끌려내려와 들이받을 때 엄동설한을 맞아 땅도 얼음처럼 단단하니 이때를 당하여 급한 기가 위로 창자를 치받고 안으로 요동치다가 대추나무 아래로 끌려와 다시 맞으니 이것이 이른바 설상가상이라. 여러 차례 맞은 데다 찬 바람마저 쐬며 앞 마을의 주점으로 가서 (술을 마시고) 돌아오니 그날 밤 눕거나 앉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호흡이 난감하니 숨이 차고 피를 토하는 게 멈추지 않아 두 밤을 지나지 못하고 죽었으며 (이때) 핏덩이를 토하고 갑자기 죽으니 장기 안이 손상되어 급히 죽은 것이 확실하다. 이런 까닭에 정구갑이 죽은 실제 원인은 휘두른 주먹에 내상을 입어 피를 토하며 죽음에 이른 것이라 하겠다(以揮撲內傷吐血致死).

삼검에서는 광명운과 임춘화의 범죄의 경중도 다시 따져 물었다. 우선 정구갑을 구타한 것은 얼굴 부위는 임춘화, 아랫배 부위는 광명운으로 두 사람 모두 정구갑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부위를 구타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정구갑을 마루에서 끌어내려 처박아버린 것은 광명운이며 대추나무 아래에서 휘둘러 박아버린 것도 광명운으로 임춘화는 이때 두 번 모두 뒤에서 밀고만 있었기 때문에 광명운이 더 주도적으로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보아 정범은 광명운, 종범은 임춘화로 결정하였다. 이는 임춘화를 정범으로 정했던 초검과 복검 때와는 달라진 판결이다.

5. 사검 검시와 심문, 결론

삼검의 보고가 초검, 복검과 크게 달라졌기 때문에 상부에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재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정심(頂心)	머리마루점; Vertex	온전함(全)	평소와 같으나 붉은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紅)	평소와 같음(如常)	약간 붉음(微紅)
편좌편우(偏左偏右)	마루부위; Parietal region	온전함(全)	상동	상동	온전하며 색깔이 청흑색을 띠거나 붉은색을 띠며 (全色靑黑或紅)
신문(額門)	정수리점; Bregma	온전함(全)	상동	상동	상동
두로(頭顱)	이마뼈; Medial part of frontal bone	온전함(全)	상동	상동	상동
액각(額角)	이마뼈; Lateral part of frontal bone	온전함(全)	상동	상흔이 한곳 있음. 둘레의 길이는 7촌 9분. 색깔은 암적색(紫黯色)이며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음 (有傷痕一龐圍圍長七寸九分色紫黯 皮堅貼)	상동
양태양혈(兩太陽穴)	관자놀이점; Pterion	온전함(全)	상동	평소와 같음. 청흑색을 띠며 (如常色靑黑)	상동
양미(兩眉)	눈썹; Eyebrow	온전함(全)	평소와 같음(如常)	상동	상동
미총(眉叢)	눈썹살사이; Glabella	온전함(全)	상동	상동	상동
양안포(兩眼胞)	눈꺼풀; Eyelid	온전함(全)	평소와 같이 꼭 닫혀 있으나 희미한 푸른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緊合變動微靑色)	평소와 같으나 조금 떠짐 (如常微開)	약간 떠짐(微開)
양안쌍정(兩眼雙睛)	눈동자; Pupil	온전함(全)	평소와 같음(如常)	온전함(全)	온전함(全)
양시점[兩頰]	광대부위; Zygomatic region	온전함(全)	평소와 같으나 붉은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紅)	오른쪽 뺨에 상흔이 한 곳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7촌 2분. 색깔은 암자색(자암색)이고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음. 왼쪽 뺨에 상흔이 한 곳 있으며 둘레의 길이는 4촌 4분. 색깔은 암자색(자암색)이며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음 (右頰頰有傷痕一龐圍圍長七寸二分 色紫黯皮堅貼左頰頰有傷痕一龐圍 圍長四寸四分色紫黯皮堅貼)	온전하고 색깔이 황색이거나 청색을 띠며 (全色黃或靑)

Fig. 2. The results of the investigations on Jeong Gu Gap.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양이(兩耳)	귀; Ear	은진함(全)	上同	평소와 같음(如常)	上同
이륜(耳輪)	귓바퀴; Auricle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이수(耳垂)	귓볼; Lobule of auricle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이귀(耳竅)	귓구멍; External acoustic pore	은진함(全)	上同	上同	은진하나 혈흔이 말라 붙어 있음(全血痕乾貼)
비량(鼻梁)	코등; Nasal bridge	은진함(全)	곧음(直)	주저앉음(陷)	씩은 상처(腐傷)
비준(鼻准)	코끝; Nasal tip	은진함(全)	오뎅함(尖)	평소와 같음(如常)	上同
비구(鼻竅)	코구멍; Naris	은진하나 (全血汗流出)	평소와 같음(如常)	上同	上同
인중(人中)	인중; Philtrum	은진함(全)	上同	上同	은진함(全)
상하순문(上下脣吻)	위, 아래 입술; Lips	입을 꼭 다물고 있고 피가 흘러내림 (緊閉血汗流出)	꼭 다물고 있음. 은비녀로 시험했으나 색이 변하지 않음 (緊閉試銀叉色不變)	평소와 같으나 조금 벌어짐 (如常微開)	벌어짐(開)
상하아치(上下牙齒)	치아; Teeth	은진하며 꼭 다물고 있음 (全緊閉)	다물고 있음(緊)	평소와 같음(如常)	곧게 다물어짐(緊關)
설(舌)	혀; Tongue	은진함(全)	이빨에 닿아 있음 (抵齒)	上同	이빨에 닿아 있음(抵齒)
합해(頰類)	턱밑; Submandibular	은진함(全)	평소와 같으나 청홍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青紅)	上同	은진함. 푸른색을 띠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부드럽고 연함 (全色靑按指柔軟)
인후(咽喉)	인후두; Pharyngolarynx	은진함(全)	上同	피멍이 있는데 손가락으로 누르니 피가 흘러나옴(血癍而按指出血)	上同
식기상(食氣竅)	인후두; Pharyngolarynx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혈분골(兩血盆骨)	빗장뼈; Clavicle	은진함(全)	上同	색깔이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色或靑或赤)	살갗이 일어나고 높이 부었으며 색깔은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胞起浮高色靑 或紅按指堅)
양견갑(兩肩胛)	어깨뼈; Scapula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Fig 2. Continued.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양액지(兩腋肌)	겨드랑이; Axilla	온전함(全)	상동	상동	온전하였으며 색깔은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全色靑或紅按指堅)
양흉벽(兩脅膊)	위팔; Upper arm	온전함(全)	상동	상동	상동
양곡추(兩膕)	팔꿈치; Elbow	자주빛(紫色)	상동	상동	왼쪽에 색이 상처가 있고 살갓이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남. 오른쪽은 온전하였으며 색깔은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을 붉음.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左邊腐傷肉爛骨露右邊全色靑或紅按指堅)
양수완(兩手腕)	손목; Wrist	온전함(全)	상동	상동	ND
양수심(兩手心)	손바닥; Palm	약간 굽었음(微曲)	상동	상동	ND
십지(十指)	손가락; Finger	온전함(全)	조금 쥐고 있으나 평소와 같음(微握如常)	양 손 손가락을 조금 쥐고 있음(兩手指微握)	퍼짐(散)
혹은 수지(手指)	손가락 끝; Fingertip	온전함(全)	평소와 같음(如常)	평소와 같음(如常)	온전하였으며 색깔은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全色靑或紅)
십지두(十指趾)					ND
혹은 수지두(手指趾)					
수지갑(手指甲)	손톱; Fingernail	온전함(全)	평소와 같음(如常)	평소와 같음(如常)	온전하였으며 색깔은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全色靑或紅)
수지갑봉(手指胛縫)	아래손톱허물; Hyponychium				
흉당(胸膛)	가슴; Chest	온전함(全)	평소와 같으나 붉은색으로 바뀌어 감(如常變動色紅)	청흑색(色靑黑)	온전하고 색깔이 황색이거나 청색을 띠며.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全色黃或靑按指堅)
양유(兩乳)	젖; Breast	온전함(全)	상동	상동	상동
심坎(心坎)	명치부위; Epigastric region	온전함(全)	상동	상동	상동

Fig 2. Continued.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두복(肚腹)	명치부위; Epigastrium (한글; 영문)	아래로 꺼져 있음(低陷)	아래로 꺼져 있으나 평소와 같음 (低陷如常)	청홍색, 명치부위가 팽창 (色靑黑肚腹膨脹)	부풀어 오름(脹)
양능(兩肋)	갈비뼈; Rib	은진함(全)	평소와 같으나 청홍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靑紅)	청흑색(色靑黑)	은진하고 색깔이 황색이거나 청색을 띠며.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全色靑或黃按指堅)
양脇(兩脇)	옆구리; Flank	은진하나 왼쪽의 색깔이 붉음 (全左邊色紅)	상同	청흑색(色靑黑)	ND
제두(臍肚)	배꼽부위; Umbilical region	왼쪽 편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하고 길이는 2촌 5푼, 너비는 1촌 7푼, 손가락으로 누르니 부드럽고 연함 (左邊色微靑長二寸五分 廣一寸七分按指柔軟)	평소와 같으나 왼쪽이 청홍색으로 바뀌어 감. 손가락으로 누르니 부드럽고 연함 (如常變動色靑黑按指 柔軟)	평소와 같음(如常)	은진하고 색깔이 약간 청색 을 띠며. 아랫배와 신낭 위에 상처가 한 곳 있는데 색깔은 붉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길이는 5지 5푼이요 모양은 작은 감나무 잎처럼 생겼음 (全色微靑下腹腎囊上有傷 痕一蘆色赤按指堅硬圍怨 長五寸五分形如小柿葉)
양과(兩胯)	살골부위; Inguinal region	은진함(全)	평소와 같으나 푸른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靑)	평소와 같음(如常)	ND
장물신낭(莖物腎囊)	남성생식기; Male genitalia	은진함(全)	평소와 같으나 두 고환이 부드럽고 연함 (如常兩卵柔軟)	신낭에 상흔이 한 곳 있는데 들레의 길이는 삼촌 일푼이요 색깔은 암자색이라.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음. 음모가 빠지지 않았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딱딱했음 (腎囊有傷痕一蘆圍長三寸一分色 紫黯皮堅粘毛不落按指堅硬)	정물의 귀두 부분에 상처가 있으며 색깔은 검음. 신낭은 부풀어 있었는데 왼쪽의 고환은 온전한데 죽 늘어졌고 오른쪽 고환은 조금 쪼그려 들었음 (莖物頭傍色黑腎囊脹高左 卵全垂右卵作縮)
양퇴(兩腿)	넓적다리; Thigh	은진함(全)	평소와 같으나 푸른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靑)	색깔은 붉은 색이고 평소와 같음 (色赤如常)	은진하였으며 색깔은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全色靑或紅按指堅)

Fig 2. Continued.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재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양슬(兩膝)	무릎; Knee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경인(兩臙肋)	종아리; Leg	온전함(全)	평소와 같음(如常)	上同	上同
양각완(兩脚腕)	발목; Ankle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각면(兩脚面)	발등; Dorsum of foot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십지(十趾)	발가락; Toe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혹은 족지(足趾)	발톱; Toenail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십지갑(十趾甲)					
혹은 족지갑(足趾甲)					
< 뒷 면 >					
뇌후(腦後)	뒤통수; Occiput	온전함(全)	평소와 같으나 붉은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紅)	평소와 같음(如常)	온전하며 붓기가 올라옴. 색깔은 적색이고 종기가 일어났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부드럽고 연합 (全浮高色靑胞起按指柔軟)
발제(髮際)	두발선; Hairline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이근(兩耳根)	조가비용기; Eminence of conchae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항경(項頸)	목위; Posterior cervical region	온전함(全)	上同	목의 뒤쪽 턱의 아래쪽이 청홍색을 띠. 많이 부어있고 매우 큰 상처를 받은 듯 함 (項背頤下色靑黑浮高甚焉受傷太甚)	上同
양미박(兩臂臑)	어깨뒤; Posterior shoulder region	온전함(全)	평소와 같으나 청홍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靑紅)	오른쪽 어깨 뒤쪽에 상처가 한 곳 있음. 색깔은 암자색(자암색)이고, 피부가 단단히 붙어 있음. 길이는 삼일촌 일푼이며 너비는 세 치이다 (右臂臑有傷痕一龐色紫黯皮堅貼長 十一寸一分廣三寸)	上同
양홀주(兩肘肘)	팔꿈치; Cubitus	온전함(全)	上同	평소와 같음. 색깔이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간간이 굳은 살이 있음 (如常色或靑或赤間間皮皴)	온전하며 간간이 종기가 일어남. 색깔은 청색이거나 붉은색이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부드럽고 연합 (全間間起胞色靑或紅按指 柔軟)
수완(手腕)	손목; Wrist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수배(兩手背)	손등; Dorsum of hand	온전함(全)	上同	上同	上同

Fig 2. Continued.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수지(手指)	손가락; Fingers	은전함(金)	조금 쥐고 있거나 평소와 같음 (微握如常)	上同	上同
수지갑(手指甲)	손톱; Nail	은전함(金)	평소와 같으나 약간 누렇게 됨 (如常微黃)	上同	上同
척배(脊背)	척추뼈; Vertebra	은전함(金)	평소와 같으나 청홍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動色青紅)	上同	은전하며 색깔은 청색이거나 흰색이고 은전하며 간간히 종기가 일어남. 손가락으로 누르니 단단하였음 (全色青白間間起胞按指堅)
척려(脊膂)	척추옆근육; Paraspinal muscle	붉은색(色紅)	上同	上同	上同
양후륵(兩後肋)	늑골뒤; Rib, posterior part	은전함(金)	上同	上同	上同
양후협(兩後脇)	옆구리 뒤; Lumbar region, posterior part	왼쪽 겨드랑이에 찰과상(어디 스치거나 문질러 살갓이 벗겨짐) 이 두 곳 있음. 머드나무 잎처럼 생겼고 한 곳은 길이가 2촌 2푼, 너비는 1촌, 다른 한 곳 은 길이가 1촌 5푼에 너비는 4푼임 (左脇瘀傷痕爲二庫狀如 柳葉一廳長二寸二分 廣一寸一廳長一寸五分 廣四分)	上同	上同	上同
요안(腰眼)	허리; Waist	은전함(金)	上同	上同	은전하며 색깔은 청색이거나 붉은색이고 간간히 종기가 일어남. 손가락으로 누르니 부드럽고 연함(全色青或 紅間間起胞按指柔軟)
양둔(兩臀)	볼기; Buttocks	은전함(金)	上同	上同	上同
곡도(穀道)	항문; Anus	은전함(金)	평소와 같으나 은비녀로 시험했으나 색이 변하지 않음 (如常試銀叉色不變)	은비녀로 시험하니 색이 조금 변함 (試銀叉色微變)	上同

Fig 2. Continued.

시장에 기술된 부위	현대의 해부학적 위치 (한글; 영문)	초검	복검	삼검	사검
양퇴 (兩腿)	넓적다리; Thigh	은진함(全)	평소와 같으나 붉은색으로 바뀌어 감 (如常變色紅)	평소와 같음. 색깔이 어떤 부분은 푸르고 어떤 부분은 붉음. 간간이 붉은 살이 있음 (如常色或青或赤間皮胞)	上同
양곡추 (兩膕)	다리오금; Popliteal fossa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퇴두 (兩腿肚)	종아리; Leg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각과 (兩腳踝)	부사뼈; Medial and lateral malleoli	은진함(全)	평소와 같음(如常)	上同	上同
각근 (脚跟)	발뒤꿈치; Heel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양각심 (兩脚心)	발바닥; Plantar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족지 (足趾)	발가락; Toes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족지두 (足趾肚)	발끝; Tiptoe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족지갑봉 (足趾甲縫)	아래발톱허물; Hyponychium	은진함(全)	上同	上同	上同
실인 (實因)		병으로 죽음 (以病致死)	병환 (病患)	맞아 입은 내상과 토혈로 죽음 (以揮搏內傷吐血致死)	주먹으로 때려 죽음 (拳打致死)

Fig 2. Continued.

서는 다시 훈령을 내려 과천군수에게 이 사건에 대한 네 번째 검험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과천군수는 3월 26일부터 현장에 착임하여 조사를 시작하였고 4월 3일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여기서도 취조에서는 피의자 광명운, 임춘화의 증언이 중요하였고 나머지 증언은 별로 이전과 차이가 없었다. 정범이 었다가 삼검에서 종범이 된 임춘화의 진술에 의하면 툇마루에서 정구갑이 끌어내려져 마당에 처박힐 때 이 광명운이 그리 한 것이고 자신은 오히려 정구갑에게 짚신을 찾아 주어 신을 수 있게 했었다 하며, 정구갑을 때린 것도 광명운이 하복부를 주먹으로 친 것은 사실인지 모르나 자신은 밀치기만 했을 뿐 때린 적이 없으며 그가 죽은 것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다시 대답하였다.

삼검에서 졸지에 정범이 되어버린 광명운은 자신이 정구갑의 소매를 끌어 마루 아래로 떨어뜨려 땅에 처박은 것과 주먹으로 하복부를 때린 것은 인정하였지만 이는 정구갑의 허리띠를 잡던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그 당시 정구갑도 이 때문에 아프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고 하였다. 자신은 정구갑이 사망한 후 잡혀와서야 이쪽에서 때려 정구갑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였다. 두 사람의 진술 내용은 삼검 때와는 달라졌는데 그전까지 서로 상대편 때문에 정구갑이 죽었다고 하던 것과는 달리 사검에서는 광명운이 구타하여 정구갑이 죽은 것은 두 사람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장(屍帳)에 기록된 검시 내용은 Fig. 2에 정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삼검 때 상처의 흔적이 있다고 보고한 바 있었던 이마뼈, 광대 부위, 인후두 등에서는 이번에 그 흔적을 찾지 못했던 반면 배꼽 부위와 생식기 부위에서는 삼검 때와 마찬가지로 상처를 확인하였다. 이렇게 보면 아랫배를 때렸다는 광명운의 자백은 사검의 검시에서도 확인되었지만 임춘화가 가격했다는 머리 부분의 상처는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로써 검시 내용과 증언은 정구갑의 죽음이 광명운의 구타에 의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아래에 사검관의 보고서에 실린 결론을 요약하여 신는다.

(시신을) 깨끗이 씻고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니... (중략)... 살결은 靑黃色이고 ... (중략)... 얼음처럼 단단해졌으니 이는 죽은 지 넉 달이 되고 이미 세 차례의 검험을 거쳤기 때문이다. 냉골에서 겨울을 지나며 여러 모습으로 변했고, 팔꿈치의 왼쪽이 안에서 문드러지고 뼈가 드러나고 피가 엉겨 살갓에 달라붙어 있으니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피부와 근육이 시신을 검색하는 데에서 문질러져서 여러 차례 범물(시신을 검사할 때 깨끗이 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건)로 씻기면서 썩은 상처이니 결코 (사망원인으로) 의심을 살 만한 부위는 아니다.

남성생식기가 부풀어 오른 것은 찬 바람을 맞아서인듯하고 배꼽 부위 아래 고환 위에 상처가 한 곳 있으니 색깔은 붉고 손가락으로 누르니 딱딱하였고 길이는 5치 5푼(5寸5分)이요 모양은 작은 감나무 잎처럼 생겼다. 무원록을 살펴보니 입과 눈이 벌려졌고 두 손이 쥐어지지 않는 등의 증세는 맞아서 죽은 조항에 합치되고 또 ‘무릇 맞아서 드러난 상처는 크기가 조금 크고, 독기가 축적되어 안으로 향하게 되면 하루 이틀이 지난 후에 죽게 된다.’[신주무원록 하-九 棒毆死條]라고 하였는데 유족들이 말하길 (정구갑이) 선혈을 연달아 토하였다고 하니 독기가 축적에서 올라온 것이 명백할 뿐더러 여러 사람의 진술이 한결같이 (그의 죽음은) 구타당해서라고 하고 (흉기로) 주먹 외에 다른 것은 없다 하니 배가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매운 주먹으로 직접 때리는 상황을 맞이하니 어찌 바로 죽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주먹으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은 다시 의논할 필요가 없으니 사망원인은 주먹으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렀다(以拳打致死)고 기록한다.

결론을 보면 사검관은 검사에서 발견한 소견 중 배꼽 부위에서 확인한 상처 외에는 일체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머리 부위의 상처는 삼검에서 다수 확인되어 보고되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온전하다고 기록하여 삼검의 보고를 부정하였다. 따라서 사검관은 정구갑 몸에서 확인된 상처 중 배꼽 부위의 상처만 유효한 타격이라고 보았으며 이는 이 사건의 정범인 광명운이 가격하였다고 자백한 부위와 일치하였다고 보고, 사망원인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음에 이르렀다고 판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아랫배를 타격한 광명운을 정범으로 하고 그를 도와 정구갑을 죽음에 이르게 한 입춘화는 비록 타격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종범으로 결정하였다.

고 찰

근대화 이전 우리나라 검시에 대한 기록인 조선시대의 검안 서류에 대해서는 그간 역사학자의 많은 보고가 있었다[1-4].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사법적 분쟁과 민중의 삶에 대한 소중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한편 당시의 검안 서류 안에는 사망자의 시신을 검시한 시장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는 매우 객관적 관찰기록으로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정황을 법의학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도 알려졌다. 하지만 남아 있는 시장기록에 대해 법의인류학 및 의학적으로 검토를 시행하여 보고한 연구는 지금까지 매우 드물었다. 우리 보고는 조선시대 검안 서류에 대해 역사학적 측면보다는 검시기록에 대한 의학적·법의인류학적 연구에 더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본 건에 대한 초검과 복검 검시에서는 정구갑의 몸에서 구타에 의한 것으로 볼만한 상흔을 거의 확인하지 못하였다. 두 차례에 걸쳐 시행된 초검과 복검에서는 거의 동일한 소견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몸에는 육안으로 쉽게 구분할 수 있는 상처가 검시 당시에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은 사실이었던 것 같다. 당초 이 사건의 고발인은 피의자의 구타에 의해 정구갑이 사망하였다고 신고하였지만, 검시 결과 외상의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점은 사망원인을 결정하는 데 있어 크게 혼란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초검관이 육촌동생과 부인 등 유족들을 취조한 결과 이들은 고발 당시 했던 이야기와는 달리 정구갑이 구타당하는 상황을 직접 보지 못한 것이 분명하였다. 고발인인 사망자의 육촌동생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며 죽은 이의 부인은 사건 당일 남편과 피의자 두 사람이 드잡이하던 것은 볼 수 있었지만 싸움이 벌어진 정황을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었고 남편이 집을 나설 때와 돌아와서 앓다가 죽은 것만 겨우 파악하고 있었다. 특히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매우 외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목격자도 거의 없어 사건의 정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피의자 두 사람은 죽은 사람과 서로 다투며 이리저리 휘둘리다 그가 쓰러진 것은 인정하였지만 구타한 적은 없다고 완강히 부인하였다. 목격자의 증언과 검시 결과, 무원록 등에 기술된 사실이 서로 일치할 때 비로소 증거와 증언의 가치를 인정하던 조선시대 사망사건 조사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구타와 사망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히 결론 내리기 어려운 경우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정구갑이 사건 이전 건강하여 특별한 질환이 없었고 사건 후에는 심하게 앓다가 불과 며칠 만에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피의자와 죽은 이 사이에 있었던 싸움이 그의 사망과 어떤 형태이건 관련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초검관과 복검관은 보고서 마지막에 이르기를 사망원인은 질병에 의한 것으로 정하였지만 피의자인 광·임 양인에게 정구갑의 사망에 대한 모종의 책임도 함께 묻는 방식으로 종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설정하는데 있어 조선시대의 다른 유사사건과는 구체적 양상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우선 조선시대에 구타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묻기 어려운 경우는 대개 구타 후 바로 죽지 않고 일정 기한(辜限)을 넘어서야 사망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4,7].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는 이러한 사례와는 달랐다. 죽은 이에 대한 검시에서 명확한 구타흔의 확인에 실패하고 구타가 발생한 당시 증인이 아무도 없었으며 피의자로부터 어떠한 자백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심증이 가더라도 이를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범죄사건 조사와 판결은 검험관의 입

의적 판단에 의해 내려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당시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와 판결은 검험관 자의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판단의 근거(무원록), 증언, 검시 결과, 피의자에 대한 취조기록 등이 일치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잘 알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이 초검관과 복검관이 결론 내린 그대로 끝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초검관과 복검관이 곱.임 양인을 주범과 종범으로 결정하여 보고하였다 하더라도 사건의 직접적 사망원인을 질병에 의한 것으로 해버리면 이 사건을 살인 사건으로 종결하기 어렵고 특히 주범과 종범에 대한 형량을 결정하기 어려운 때문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시행된 삼검과 사검에서는 이전 조사에서 미흡했던 부분— 시신에서 구타흔을 찾는 작업과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는 점 등—에 조사가 집중되었다고 생각된다. 먼저 삼검에서는 초검과 복검에서 거의 확인하지 못했던 머리카락 부분에서 다수의 구타흔으로 볼만한 상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아랫배 배꼽 주변에서도 의미 있는 상흔을 관찰하였다. 삼검은 검시 후 불과 삼일 만에 보고가 이루어질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이때 이전까지는 인정하지 않던 구타에 대한 자백도 피의자로부터 마침내 받아내게 되었다. 초검과 복검에서 절대 인정하지 않던 구타에 대한 사실을 피의자들이 왜 삼검 때가 되어서는 갑자기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 다만 피의자 두 사람은 정구갑의 죽음은 서로 상대방의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하여 취조 내용의 상이점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했다.

사검은 삼검에서 보고된 사실을 재차 확인하라는 훈령을 받고 실시된 것으로 이 사건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 삼검은 사건의 합리적 종결이란 측면에서 초검-복검보다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의 증언 등에서 보이는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니었다. 또한 사검의 검시에서는 삼검에서 새로 확인했던 머리 부분의 상흔을 거의 확인하지 못했다. 이러한 사실이 삼검과 사검이 시행된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 시신이 더욱 많이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삼검에서 무리한 검시를 한 것을 바로잡은 것인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편 사검에서는 하복부 배꼽 부위의 상처를 새로 확인하였는데 이 상처는 삼검 때는 그 존재가 부정되었지만 초검과 복검 때 이상 소견으로 기술되어 보고된 바 있었다. 사검 때 피의자 심문에서 광명운이 하복부를 때려 정구갑이 사망한 것으로 거의 확정되었는데 이 하복부-배꼽 부위 상처를 그 당시 맞아 생긴 것으로 판단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 사망사건의 검시에서 금과옥초처럼 이용되던 무원록에는 맞아 생긴 상처의 경우 어두운 빛깔로 변함과 동시에 만졌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며 물을 떨어뜨렸을 때 흠어지

지 않고 구슬처럼 모여 있는 것을 다른 원인과 구별하는 중요한 근거로 간주하였다(增修無冤錄大全 上 檢覆 檢式: 驗傷 須用手指 按其青紅處 眞傷處堅硬 指一起 仍然青紅 將水滴上 水珠不散開, 如係發變處, 將指一點起, 即時白色, 將水滴上, 水不停住) [7]. 이는 무원록에서 기술된 바, 사망 후에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시신의 아랫부분에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시반(屍斑)과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따라서 죽은 정구갑의 몸 여러 곳에서 초검과 복검 중 색 같이 변한 곳을 발견하였음에도 이것을 구타에 의한 상흔이라고 확정하지 못한 것은 검시 중 손으로 만졌을 때 딱딱하다고 느끼지 못하였으며 물을 떨어뜨렸을 때 멍쳐 있지 않고 바로 흠어졌기 때문이다. 즉 초검과 복검에서는 변색된 부위가 무원록이 규정한 외상의 흔적이 만들어내는 소견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위가 구타에 의한 것이라 확신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사검 때는 배꼽 주위 등의 변색 부위가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을 확인하여 이 부위가 구타에 의한 상처라고 확정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비로소 증언과 검시 소견, 법문(무원록)의 기술이 일치하여 하복부를 가격했다고 자백한 광명운을 주범으로 확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선시대 사망사건의 검시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부검을 시행할 수 없었고 실시하더라도 이를 정확히 해석할 법의학적 지식의 축적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정구갑의 사망원인을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다. 사검관은 배꼽 부위에 맞은 상처가 있어 이 곳을 정구갑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확정하였지만, 사실 그의 죽음은 피부의 타박상보다 내부 장기 손상에 의한 출혈과 이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사(hypovolemic shock)였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부인인 이조이 등의 증언에 의하면 사건 이후 집에 돌아온 정구갑이 무언가를 먹고 마시기만 하면 바로 토하고 죽기 전에도 피를 많이 토한 후 바로 사망하였다 하였는데, 이를 보면 그에게는 아마도 소화관의 출혈이 있었던 듯 하며 점점 그 정도가 심하여져서 저혈량성 쇼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다. 특히 정구갑은 집으로 돌아와 극심한 갈증을 호소하며 곧 인사불성이 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는 저혈량성 쇼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기도 하다. 아마도 정구갑은 임.곽 양인과 실랑이를 벌일 때 넘어지거나 아니면 주먹으로 맞아 내부 장기의 어딘가 손상이 발생하였고 이로부터 출혈이 계속되어 사망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저혈량성 쇼크는 출혈에 의한 것과 출혈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이 있다. 이 중 출혈에 의해 저혈량성 쇼크가 오는 경우는 매우 흔하며 이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서는 환자 병력을 정확히 청취하여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혈량성 쇼크가 온 환자의 경우, 갈증(thirst), 근육경련

(muscle cramp), 기립성 저혈압(orthostatic hypotension) 등 증상이 있으며 격심한 복부 및 흉부통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혈압이 저하하고 여러 기관에 혈액 공급이 줄어들면서 초조(agitation), 졸음증(lethargy), 착란(confusion) 등 증상이 일어나게 된다[8]. 저혈량성 쇼크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여러 증상은 정구갑이 집에 돌아와 보인 증상과 거의 동일하다.

조선시대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내부 출혈이 발생하여 사망하는 경우는 상당히 흔한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아마도 요즘이라면 사건 발생 즉시 시행되는 응급 수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 터이나 외과적 치료가 전무하고 사망 후 부검조차 할 수 없는 당시 상황과 의학 수준 때문에 정구갑의 성공적 치료는 기대할 수 없었고 그 사망원인까지도 결국 오리무중으로 남게 되었다.

REFERENCES

1. Kim H. A basic evaluation of criminal investigation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century in the Kyujanggak archives. *J Choson Dynasty His.* 1998;4:155-230.
2. Kim H. The Publication of the Shinju-Muwonrok (新註無冤錄; the newly annotated edition of 無冤錄) during the early 15th century, and the autopsy procedures at the time. *Korean J Leg Hist.* 2003;195-230.
3. Kim H. A postmortem examination, document of 'normal exception'. *Jangseogak.* 2015;34:312-25.
4. Yoo DY. A study on postmortem investigation in Choson Dynasty era: Hanyang University; 2017.
5. Shin DH, Hong S, Kim CY, Hong SJ, Ki HC, Lee SD, et al. Prospect of paleopathological research on the forensic work records of Joseon Dynasty period in Korea. *Asian J Paleopathol.* 2023;5:8-20.
6. Yoon YH, Shin DH, Hong SU, Hong SJ, Lee SD, Ki HC, et al. Anatomical landmarks used for post-mortem investigation records described in Jeungsu Muwonrok Eonhae of Joseon Dynasty period. *Anat Biol Anthropol.* 2023;36:67-76.
7. Song C, Lee H, Jang Y, Hwang M. Translation: Jeungsu Muwonrok Eonhae.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ation Center; 2004.
8. Taghavi S, Nassar AK, Askari R. Hypovolemic Shock. 2023 Jun 5. In: StatPearls [Internet]. Treasure Island (FL): StatPearls Publishing; 2024 Jan.

간추림 : 본 연구는 1904년 대한제국 광주부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에 대해 네 차례에 걸쳐 시행된 검험 조사 보고서에 대한 법의인류학적 검토의 결과이다. 이 사건에서 유족들은 피해자가 상인 조직에 가입을 강요하던 사람들에 맞아 사망하게 되었다고 고발하여 조사가 시작되었다. 검시의 결과 구타의 흔적이 뚜렷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시 피해자가 구타당하는 정황을 제대로 목격한 사람이 없고 피의자들도 구타했다는 것을 부정하고 있어 처음 두 차례 조사에서는 병환을 사망원으로 하여 종결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시행된 조사에서 구타의 흔적을 추가로 발견하였고 이전까지 구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던 피의자들이 돌연 자백함으로써 최종 결론은 구타에 의한 사망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선시대(대한제국) 당시 의문사 조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관련자의 증언, 검시 결과, 법문(無冤錄)의 조항 등 세 가지 결과가 모두 일치하여야 비로소 완결될 수 있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정황상 분명히 인과관계가 의심되는 경우라도 위 세 가지 요소가 일치된 결론을 보여주지 못하면 법정에서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찾아보기 낱말 : 무원록, 조선시대, 대한제국, 검험, 검시